

청약관련 사항은 관련법령의 개정, 인허가 과정,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
편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,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,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.
청약자격 미숙지,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이전기관(산업단지) 종사자 특별공급

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 47조
전 주택형 공급세대수의 20% 이내

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

① 해당 기관에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대상자로 확인하여 **‘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’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**

-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8호,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7조 제7항 및 「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」에 해당하는 자

② **입주자저축 가입 요건 : 해당 없음**

청약자격 요건

- 청주시 산업단지 입주(예정) 기업으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종사자로서 ‘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’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자
 1.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기업의 종사자
 2. 연구원이 20인 이상인 연구기관의 종사자
 3.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(외국 의료기관도 포함)에 근무하는 종사자
 4.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

당첨자 선정방법

-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, 당첨자의 동·호 배정은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, 다른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추첨합니다.
-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대상자와 그 세대에 속한 세대 구성원이 아래 조건을 갖춘 자에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
 - 해당 산업단지가 속한 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(세대원 포함)
 - 해당 산업단지에서 공급한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는 경우 (세대원 포함)
- * 신청자 및 그 배우자가 모두 주택특별공급 대상자인 경우에는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세대가 분리되어도 주택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함
- * 단, 청약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.
 - 다른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
 - 해당 산업단지가 속한 주택건설지역(청주시)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
 - 해당 산업단지에서 공급한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

당첨자 신청방법

- 주택의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「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」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주택 특별공급 신청서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*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이 위 내용에 따른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을 허위로 한 경우에는 시·도지사 또는 시장 등은 그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산업단지 이전기관 종사자 등의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통한 **인터넷 접수만 가능**합니다.
- * 인터넷 청약을 위해 사전에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,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해당 산업단지

- 청주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지, 청주일반산업단지, 청주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, 오송제2생명과학단지(바이오폴리스지구), 오송생명과학단지, 오창과학산업단지, 오창제2산업단지, 오창제3산업단지, 오창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지, 서오창테크노밸리, 옥산산업단지, 내수농공단지, 현도농공단지, 남청주현도일반산업단지, 강내산업단지